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최신 추가 관세 부과 조치 해설

2025.04

Issue 3

개요

2025년 4월 9일 저녁, 해관총서는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시행 사항 공고(해관총서공고 2025년 제 4호)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 조치의 공고》(세위회공고 2025년 제 4호) 및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 조치 조정의 공고》(세위회공고 2025년 제 5호)에 따르면,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 상품에 대해 현행 적용 관세율의 기초하에 84%의 관세를 추가 부과합니다.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 전, 발송지에서 운송을 개시하여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2025년 5월 13일 24시까지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이하 “운송중인 화물”이라 함), 이번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 58호는 신고 규칙을 포함하여 상기 조치의 시행 세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공고 원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一、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신고하여 수입하는 모든 미국산 화물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 방식, 적용 관세율(현행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또는 잠정세율과 이미 시행되는 추가 관세율의 합)의 기초하에 이번 관세를 추가 부과합니다.

二、“운송중인 화물”의 경우, 수입 기업은 이번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 기업은 미국산 수입 화물의 운송 상태를 자체 확인하고 관련 화물의 운송수단이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 전 발송지에서 출발하였으며 관련 화물이 2025년 5월 13일 24시 전까지 신고 및 수입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신청하는 “운송중인 화물”의 경우, 화물을 실은 운송수단이 입국 신고를 한 이후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관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등 구역 외 국내판매와 구역 외 가공무역 국내판매 등 무역 방식에 따라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 이번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신청하는 경우, 2025년 5월 13일 24시 전까지 국내판매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三、“운송중인 화물”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신청하는 수입 기업의 경우, 관련 수입 화물에 대해 다음 요구사항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一) 수입 화물 통관신고서 “운송 개시일”란에 입국 화물이 경외 첫 번째 선적 항구를 떠난 일자를 기입해야 하며, 운송 시작 일자는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 전이어야 하고 비고란에 “<추가 관세 부과에 운송중인 화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관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등 구역 외 국내판매와 구역 외 가공무역 국내판매 등 무역 방식에 따라 수입되는 화물 및 기타 실제 입국/출국 상황이 없는 화물의 경우, 신고 시 첨부 서류란에 화물 운송 상태의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증빙서류는 화물의 경외 발송지로부터 입국 후 발송지까지의 운송, 운송 개시일, 운송 노선 등 정보를 포함해야 함), 이와 더불어 비고란에 “<추가 관세 부과에 운송중인 화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二) 수입 신고 단계에서 수입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해야 합니다:

“본 단위는 수입 화물이 세위회공고 2025년 제4호 제3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한다고 확인했음을 약속하며, 이번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신청합니다. 본 단위는 신고 내용 및 제공하는 증빙서류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四、2025년 5월 13일 24시 전까지 수입을 신고했고(사전 신고의 방식을 채택하여 수입하는 화물의 경우, 해당 일자는 운송수단이 입국을 신고하는 일자를 말함) 이번 추가 관세를 납부한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 기업이 수입 화물의 운송 상태를 자체 확인하고 관련 수입 상품이 “운송중인 화물” 규정에 부합함을 확인하면 해관에 관련 세금 및 이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 제3조 (二)의 규정에 따라 해관에 성명을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五、가공무역 항목 하에 미국산 화물 수입에 대한 현행 보세 정책은 변경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관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一) 해관특별감독관리구역 내 보세상태로 수입한 미국산 화물과 그 가공 후 완제품은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보세 상태로 유통될 수 없으며, 국내판매 시 상응하는 보세 원자재를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해관특별감독관리구역 외 보세 상태로 수입한 미국산 화물과 그 가공 후 완제품(부산물, 불량품 포함)은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보세 상태로 유통될 수 없고, 수출 출국 또는 국내판매 수속을 밟아야 하며, 가공 후 완제품(부산물, 불량품 포함)의 국내판매 시 상응하는 보세 원자재를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二)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가공무역 수(장)책(B 수책, C 수책, E 장책, H 장책, TH 장책, TG 장책) 관리 하의 수입 재료가 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공무역 기업은 전용 수(장)책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공무역 기업은 수(장)책을 작성/변경할 때, 전용 수(장)책 표제의 비고란 첫줄에 “[M]”을 표기해야 합니다. 가공무역 전용 수(장)책 항목 하의 모든 완제품은 보세 상태로 유통될 수 없습니다.

가공무역 기업이 전용 수(장)책 관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가공무역 수(장)책을 작성/변경할 때 미국산 보세 재료와 관련 완제품에 대해서 상품명 앞에 “[M]”을 명기하고 다른 국가(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종 화물과 구분하여 상품 항목 비안을 해야 합니다.

(三)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해관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의 물류 장책(TW 장책, L 장책 등)이 미국산 화물과 관련된 경우, 상품 코드 또는 원산지를 변경하는 단순 가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PwC 해설

一、추가 부과의 적용 시점

해관총서공고 2025년 제58호에 따라 화물 수입 시간에 근거하여 이번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84%의 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 이전인 경우, 일반무역 수입과 가공무역 국내판매를 포함한 화물은 수입 신고 시간이 추가 부과 시행 일자보다 빠르면 84%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2025년 5월 13일 24시 전까지("과도기")인 경우, "운송중인 화물" 요건을 충족하면 8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으며, 84%의 관세가 이미 부과되었고 환급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해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송중인 화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은 다음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 화물의 운송 상태를 미리 확인할 것.
 2.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두차례 시간 확인이 필요한데, 각각 "운송수단 입국 시간"과 "운송 개시일"임.
 3. 운송수단 입국 시간은 화물 수입 신고 시간보다 빨라야 함.
 4. 가공무역 국내판매 등 실제 출국¹ 상황이 없는 "운송중인 화물"에 대해서 신고할 때 화물 운송 상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2025년 5월 13일 24시보다 늦은 경우, "과도기" 이후에는 일반무역 수입과 가공무역 국내판매 화물 등에 대한 운송 개시일이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보다 빠르더라도 84%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二、가공무역 관리 핵심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가공무역 항목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화물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공무역 항목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화물에 대해서는 현행 보세 정책이 유지됩니다. 보세 재료의 수입 방식은 변하지 않는데, 해외로부터 직수입할 수도 있고(一线进口) 해관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창고, 심가공결전 등 방식을 통하여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2. 해관특별감독관리구역에서 보세로 미국산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가공 후 완제품은 보세로 유통될 수 없으며, 국내판매 시에 상응하는 보세 재료를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3. 해관특별감독관리구역 외에서 보세로 미국산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그 가공 후 완제품(부산물, 불량품 포함)은 수출 출국 또는 국내판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보세로 유통(심가공결전, 해관특별감독관리 구역과 보세감독관리장소 진입 등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가공 후 완제품(불량품 포함, 부산물 제외)은 국내판매 시에 상응하는 보세 재료를 전부 신고하여 관세를 계산 및 부과해야 합니다.
4. 상기 제 2, 3 항에 부합하는 경우, 미국산 화물은 그 가공 후 완제품이 국내판매 시에 재료별로 국내판매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내판매 신고가 2025년 5월 13일 24시보다 늦으면 84%의 관세가 적용되는데, 만약 "운송중인 화물"의 정의에 부합되면, 추가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가공무역 수(장)책에서 미국산 수입 재료를 표기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리 표기 방식이 있습니다. 정책의 구현 및 시행과 기업 생산관리 간의 원활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사전에 관할 해관과 해당되는 관리 표기 방식을 확인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가공무역 기업이 전용 수(장)책 관리를 실행하는 경우, 수(장)책 작성/변경 시, 전용 수(장)책의 표제에 있는 비고란 상단에 "[M]"을 표기하고 미국산 수입 재료를 개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전용 수(장)책 항목의 모든 완제품은 보세로 유통해서는 안됩니다.
 - 가공무역 기업이 전용 수(장)책 관리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가공무역 수(장)책 작성/변경 시 미국산 보세 재료와 관련 완제품에 대해서 그 상품명 앞에 "[M]"을 표기하고, 다른 국가(지역) 원산지의 동종 화물에 대한 상품 항목 비안과 구분해야 합니다.
6. 2025년 4월 10일 12시 01분부터 해관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의 물류 장책(TW 장책, L 장책)이 미국산 화물과 관련된 경우, 상품 코드나 원산지를 변경하는 단순 가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PwC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현재 국제 해관과 국제 무역이 복잡한 편이지만, 수출입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되도록 빨리 정확한 해결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면 물류 비용 절감, 컴플라이언스 수준 향상을 이루는 동시에 기업의 일상 수출입 통관과 해관 조사 및 감독관리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PwC의 전문가는 중국 지역 해관 및 국제 무역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화물 수출입 관련 의견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컴플라이언스 및 관리 위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해관총서에서 신규 발표한 미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행 세칙과 관련하여, PwC 국제무역팀은 다음 방면에서 기업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 보세 가공무역 모델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및 계획.
- 2) 신고 단계의 문제 해결, 추가 부과 적용 여부 확인 및 신고를 위한 첨부 증빙서류 준비 협조.
- 3) 해관에 “과도기” 관련 세금 및 이자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 협조.
- 4) 미국산 수입 재료 전용 수(장)책의 작성 및 기존 수(장)책의 데이터 조정 지원 등

주석

1. 예를 들어, 해관특별감독관리구역, 보세감독관리장소 등 구역 외 국내판매와 구역 외 가공무역 국내판매 등 무역 방식에 따른 수입 화물, “로열티 후속 과세”(감독관리방식코드 9500)의 수입 화물 등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 <https://shuijie.pwcconsultantssz.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5 年 4 月 11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 <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5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